

배포 일시	2022. 11. 2.(수)	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 허경민 (044-201-3224)
	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사무관 김동희 (044-201-4816)
보도일시	2022년 11월 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자동차 운행·제작 관련 규제 합리화 중점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 심의·의결('22.10.5.~18.)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○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(신규등록, 증차, 폐차 후 대차등록)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.

-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*가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,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**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.

*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30일

** (사례)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차령 5년이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는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로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량 구입이 불가피

○ 중형자동차 제작 시 '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' 를 대형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$\pm 3\%$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- 현재, 자동차의 길이·너비·높이·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$\pm 100\text{kg}$ 으로 규정하고 있다.

* (중형) 1,600~2,000cc 승용차 / 승차정원 16~35인 승합차 / 총중량 3.5~10ton 화물·특수차
 (대형) 2,000cc 이상 승용차 /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차 / 총중량 10ton 이상 화물·특수차

- 수소전기차는 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(수소탱크→연료전지)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-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,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,
- 내·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.
-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,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`22.12.31에서 `24.12.31까지 연장한다.

* 감면액: 하이브리드('09.7~, 200만원), 전기('12.3~, 250만원), 수소전기('17.3~, 250만원)

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.

- 현재,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.
-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.
- 이에, ‘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’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㎡에서 200㎡까지 확대한다.
- 또한,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하여, 초과되는 면적의 2%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.

* (예) 부지 면적 6,000㎡인 경우 200㎡+20㎡(초과면적 1,000㎡의 2%)= 220㎡까지 가설건축물 허용

③ **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.**

-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**건설기술인과 업체***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, **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**한다.

* 건설사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

- **업체가**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**상당한 주의와 감독**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**면책**될 수 있도록 하고,
-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·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**해당 업체에 한정***하여 **벌점을 부과**하도록 정비한다.

* 현재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

-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건설,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, 이번 달에는 **자동차 제작·운행 분야**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” 면서,

- “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**적극적으로 귀기울여** 민간 위원들과 **함께 개선방안을 마련**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

연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1	<p>□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 ○ (개선) 차령 제한을 5년 이내로 완화 	<p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('23.上)</p>	<p>물류산업과 김병채 서기관 (044-201-4017)</p>
2	<p>□ 중형자동차 제원 허용오차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중형자동차는 중량 허용오차를 100kg으로 일괄 규정하여 차량중량이 무거울수록 중량관리가 어려움 ○ (개선) 중형자동차의 차량 중량 허용오차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인 ±3%로 적용하도록 개정 	<p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('23.12)</p>	<p>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 (044-201-3850)</p>
3	<p>□ 수소전기차 고압 차단밸브 장착기준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자동차의 시동을 끌 경우 수소 내압용기의 고압 차단밸브가 자동 차단되도록 규정하여,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해 가스를 방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 ○ (개선) 장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, 필요시 동력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고압 차단밸브를 일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추진 	<p>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('23.6)</p>	<p>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 (044-201-3850)</p>
4	<p>□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감면 혜택이 '22년말에 종료 예정 ○ (개선)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,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*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감면기간을 '24년말까지 2년 연장 <p>* 당초 '22년말에서 '24년말까지 연장 예정(기획재정부, '22.7)</p>	<p>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개정('22.12)</p>	<p>철도투자개발과 박선동 사무관 (044-201-4133)</p>
5	<p>□ GB 내 택배 분류시설 관리용 가설건축물 허용면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택배물류량의 지속적 증가로 기존에 택배화물 분류 시설에서 허용된 가설건축물 규모(100㎡ 이하)로는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업무공간 및 근로자 휴게공간 등 확보가 곤란 ○ (개선) 사무실, 휴게소, 화장실 등 시설 관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200㎡까지 확대 허용하고, 부지면적이 5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허용(초과하는 면적의 2%) 	<p>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('23.3)</p>	<p>녹색도시과 이정섭 주무관 (044-201-3754)</p>

연번	과제 세부 내용	조치사항	담당자 (연락처)
6	<p>□ 건설업 벌점 양벌규정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건설공사 부실시공시 부과하는 벌점은 업체·건설기술인에게 일괄적으로 같이 부과하고 벌점측정 항목 중 각각의 책임이 명백한 일부 경우 한정 부과 ○ (개선) 업체·건설기술인이 각각 부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단서 신설 - 또한, 벌점측정 항목 중 건설사업자 등 시공자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건설기술인 배치사항 등의 경우 부실행위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자로 한정 - 아울러, 벌점 측정기준도 업체·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위반시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체화 	<p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개정 (‘22.12)</p>	<p>건설안전과 유연형 사무관 (044-201-4593)</p>
7	<p>□ 건설공사 품질지침 지지력 시험 방법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건설현장에서 정재하 및 동재하 지지력시험을 실시중으로, 초고층 건물 등 하중(3만톤 이상)에 견딜 수 있는 직경이 큰 말뚝은 양방향 재하시험을 실시중이나 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에 양방향 재하시험 규정 미반영 ○ (개선) '22년 말 까지 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에 양방향 재하시험 종목 및 시험방법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며, 시험빈도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차기 지침 개정 시에 반영할 계획 	<p>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 별표2 개정 (‘22.12)</p>	<p>건설안전과 김석태 사무관 (044-201-3579)</p>
8	<p>□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인증기준 국제조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현행 수소 내압용기 관련 규정은 유럽 규정과 조화 중이지만, 유럽 규정이 UN GTR-13 1단계 기반으로 대체되어 현재 국내 기준과 조화되지 않음. ○ (개선) 현재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GTR-13 2단계의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수소 내압용기 검사기준의 개정을 추진 	<p>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(‘24.6)</p>	<p>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 (044-201-3850)</p>
9	<p>□ 자동차 신기술 관련 특례 적용 판단기준 및 절차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황) 신기술을 활용한 부품 및 기능의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저조함 ○ (개선) 연구용역을 통해 신기술에 특례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 제·개정 추진 	<p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(‘23.12)</p>	<p>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 (044-201-3850)</p>